부여 센트럴 Hue&Heim

부여 센트럴 휴엔하임 입주자 모집공고

새로운 주거 중심을 세우다 – 휴엔하임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년 9월 1일 입니다.(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임)

■ 이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기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신혼부, 및 기관시설과 공동주거단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전매를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한양공영(위)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2016년 10월자로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이 공동주택은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해당사항 등 본인의 자격상황에 대해 본인 책임 하에 부적격자임에도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동주택은 상수도와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공동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공동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며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이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합니다.

■ 이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2.27)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여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제10호_에 의거하여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여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등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8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주택 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1종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충족 우선 배정하되는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른 충족 배정분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사용자우선배정 신청 내용자와 포함에게는 1종이 배정될 수 있음(아파트 한정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제명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_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청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 – 47752 (2015.12.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됨.

■ 공급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81–9번지 일원

■ 대지면적 : 45,126㎡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1층, 지상13~20층 17개동 아파트 6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분양 418세대(특별공급세대 총 193세대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59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59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9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16세대)

■ 공급대상 및 공급면적

구분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 세대수 특별 공급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계	일반공급	총계
민영주택	2015001513–01	59.849	59	59.849	21.528	81.377	14.714	96.091	52.5039	4	4	1	13	29	42
	2015001513–02	70.331	70	70.331	24.228	94.559	17.291	111.850	61.6997	12	12	3	39	87	126
	2015001513–03	74.274	74A	74.274	25.776	100.049	18.260	118.309	65.1582	11	11	11	3	36	80	116
	2015001513–04	74.955	74B	74.955	25.589	100.544	18.428	118.972	65.7561	11	11	11	3	36	80	116
	2015001513–05	84.988	84	84.988	28.335	113.322	20.894	134.216	74.5574	21	21	21	6	69	142	211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의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이점 유의하여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둘 이하 단수 정리 등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임
- 일반 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공급시(청약시) 주택형㎡	59.849㎡	70.331㎡	74.274㎡	74.955㎡	84.988㎡
건본주택 등 약식표기	59	70	74A	74B	84

※ 건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이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세대, 원)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해당 세대수	층별 구분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금(10%) 계약시	계약후 1개월	중도금 1회(10%) 2016. 04. 28.	2회(10%) 2016. 08. 28.	3회(10%) 2016. 12. 28.	4회(10%) 2017. 4. 28.	5회(10%) 2017. 7. 28.	6회(10%) 2017. 10. 28.	잔금(30%) 입주지정일
59.849 (59)	42	34	기준층 (5층~최상층)	19,047,892	145,852,108	164,900,000	5,000,000	11,490,000	16,490,000	16,490,000	16,490,000	16,490,000	16,490,000	16,490,000	49,470,000
		4	4층	19,047,892	142,552,108	161,600,000	5,000,000	11,160,000	16,160,000	16,160,000	16,160,000	16,160,000	16,160,000	16,160,000	48,480,000
		4	3층	19,047,892	139,252,108	158,300,000	5,000,000	10,830,000	15,830,000	15,830,000	15,830,000	15,830,000	15,830,000	15,830,000	47,490,000
70.331 (70)	126	104	기준층 (5층~최상층)	22,384,037	168,415,963	190,800,000	5,000,000	14,080,000	19,080,000	19,080,000	19,080,000	19,080,000	19,080,000	19,080,000	57,240,000
		8	4층	22,384,037	164,615,963	187,000,000	5,000,000	13,700,000	18,700,000	18,700,000	18,700,000	18,700,000	18,700,000	18,700,000	56,100,000
		8	3층	22,384,037	160,815,963	183,200,000	5,000,000	13,320,000	18,320,000	18,320,000	18,320,000	18,320,000	18,320,000	18,320,000	54,960,000
		3	2층	22,384,037	157,015,963	179,400,000	5,000,000	12,940,000	17,940,000	17,940,000	17,940,000	17,940,000	17,940,000	17,940,000	53,820,000
		3	1층	22,384,037	153,215,963	175,600,000	5,000,000	12,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52,680,000
74.274 (74A)	116	88	기준층 (5층~최상층)	23,638,746	182,261,254	205,900,000	5,000,000	15,590,000	20,590,000	20,590,000	20,590,000	20,590,000	20,590,000	20,590,000	61,770,000
		8	4층	23,638,746	178,161,254	201,800,000	5,000,000	15,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60,540,000
		8	3층	23,638,746	174,061,254	197,700,000	5,000,000	14,770,000	19,770,000	19,770,000	19,770,000	19,770,000	19,770,000	19,770,000	59,310,000
		6	2층	23,638,746	169,961,254	193,600,000	5,000,000	14,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58,080,000
		6	1층	23,638,746	165,761,254	189,400,000	5,000,000	13,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56,820,000
74.955 (74B)	116	84	기준층 (5층~최상층)	23,855,658	182,044,342	205,900,000	5,000,000	15,590,000	20,590,000	20,590,000	20,590,000	20,590,000	20,590,000	20,590,000	61,770,000
		8	4층	23,855,658	177,944,342	201,800,000	5,000,000	15,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60,540,000
		8	3층	23,855,658	173,844,342	197,700,000	5,000,000	14,770,000	19,770,000	19,770,000	19,770,000	19,770,000	19,770,000	19,770,000	59,310,000
		8	2층	23,855,658	169,744,342	193,600,000	5,000,000	14,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58,080,000
		8	1층	23,855,658	165,544,342	189,400,000	5,000,000	13,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56,820,000
84.988 (84)	211	155	기준층 (5층~최상층)	27,048,682	202,451,318	229,500,000	5,000,000	17,950,000	22,950,000	22,950,000	22,950,000	22,950,000	22,950,000	22,950,000	68,850,000
		16	4층	27,048,682	197,951,318	225,000,000	5,000,000	17,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67,500,000
		16	3층	27,048,682	193,251,318	220,300,000	5,000,000	17,030,000	22,030,000	22,030,000	22,030,000	22,030,000	22,030,000	22,030,000	66,090,000
		12	2층	27,048,682	188,751,318	215,800,000	5,000,000	16,580,000	21,580,000	21,580,000	21,580,000	21,580,000	21,580,000	21,580,000	64,740,000
		12	1층	27,048,682	177,851,318	204,900,000	5,000,000	15,490,000	20,490,000	20,490,000	20,490,000	20,490,000	20,490,000	20,490,000	61,47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4항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했별 공의 소인 건조 등기 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상태 임.
- 상기 공급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분양되며, 발코니 확장에 대한 별도 비용 부담은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노인정, 어린이집 등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공의 일의 시설에 대한 권역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아파트에 포함된 가전품목, 부엌가구, 붙박이 세탁기 등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품목이 없음.
- 발코니 및 주민공동시설 등이 있는 층은 발코니, 주민공동시설 공간 등을 각층으로 간주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판매시점은 분양신고일 및 공급공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해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공급 등의 원칙에 의한 사유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세대 별 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처리 합니다. 단, 2%이내의 변동은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중도금은 당첨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의일정 비율에 의해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청약을 가능으로 한다. 각종 이상 분할하여 분양하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하여 관련법상 발코니의 일부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재에의 내용 등은 주택법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 및 마감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공동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 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 전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일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금 입주금과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공휴일 또는 금융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분양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영상 불출일자에 완납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 할 수 있음.
- 해수가로 본 부지에는 그 주변 등 지역의 상황으로 일조권 등을 현저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민원발생 시 계약자의 책임이 있음.
- 이 아파트의 구조 개선을 위해 홍보물과 다르게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화장면적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서비스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중수는 단지의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중수이며, 층 , 호수는 동 , 호수 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면적은 실제측량결과 입주자 전금 납부시에 확인되는 정확한 토지는 분리과세 기준)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라인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동 , 호수가 확정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비례 하는 입장.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함.

■ 발코니확장세대 개략 유의사항

- 상기 이아트는 전세대이아트스윗룸은 선택세대로 제외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일괄시공하여 공급하는나 청약 및 계약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일괄확장 전세대 제시된 선택형 외에 개별 설계 무제한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코니 확장 및 마감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세대간 조닝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면적서 등의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내 습도 등 환경 습건에 따라 발코니 시시 및 우려, 기타 화장 부위에 결함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하자보수 등의 요구 및 이의 제기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는 신제품 출시, 상황에 따른 등의 사유로 등등 또는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형별 확정하기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 설계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상시 및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일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현상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쇄되기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대피공간의 면적이는 실제 공간 방음문이 설치되며 단열 성능으로 인하여 결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아트스 윗츠 선택 시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은 개별공사 불가하며 이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 및 마감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공동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며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이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창호 및 마감재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이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2.27)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여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제10호_에 의거하여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여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전상상세 결과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기업형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결 불가에 따른 책임을 당사에 지지 않습니다.
- 전분주택 관람안내 : 견본주택에는 주택형별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기업형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결 불가에 따른 책임을 당사에 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청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iC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한 사전 체험을 권함

■ 공급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81–9번지 일원

■ 대지면적 : 45,126㎡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1층, 지상13~20층 17개동 아파트 6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분양 418세대(특별공급세대 총 193세대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59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59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9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16세대)

■ 공급대상 및 공급면적

구분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 세대수 특별 공급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계	일반공급	총계
민영주택	2015001513–01	59.849	59	59.849	21.528	81.377	14.714	96.091	52.5039	4	4	4	1	13	29	42
	2015001513–02	70.331	70	70.331	24.228	94.559	17.291	111.850	61.6997	12	12	12	3	39	87	126
	2015001513–03	74.274	74A	74.274	25.776	100.049	18.260	118.309	65.1582	11	11	11	3	36	80	116
	2015001513–04	74.955	74B	74.955	25.589	100.544	18.428	118.972	65.7561	11	11	11	3	36	80	116
	2015001513–05	84.988	84	84.988	28.335	113.322	20.894	134.216	74.5574	21	21	21	6	69	142	211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의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이점 유의하여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둘 이하 단수 정리 등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임
- 일반 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공급시(청약시) 주택형㎡	59.849㎡	70.331㎡	74.274㎡	74.955㎡	84.988㎡
건본주택 등 약식표기	59	70	74A	74B	84

※ 건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이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세대, 원)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해당 세대수	층별 구분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금(10%) 계약시	계약후 1개월	중도금 1회(10%) 2016. 04. 28.	2회(10%) 2016. 08. 28.	3회(10%) 2016. 12. 28.	4회(10%) 2017. 4. 28.	5회(10%) 2017. 7. 28.	6회(10%) 2017. 10. 28.	잔금(30%) 입주지정일
59.849 (59)	42	34	기준층 (5층~최상층)	19,047,892	145,852,108	164,900,000	5,000,000	11,490,000	16,490,000	16,490,000	16,490,000	16,490,000	16,490,000	16,490,000	49,470,000
		4	4층	19,047,892	142,552,108	161,600,000	5,000,000	11,160,000	16,160,000	16,160,000	16,160,000	16,160,000	16,160,000	16,160,000	48,480,000
		4	3층	19,047,892	139,252,108	158,300,000	5,000,000	10,830,000	15,830,000	15,830,000	15,830,000	15,830,000	15,830,000	15,830,000	47,490,000
70.331 (70)	126	104	기준층 (5층~최상층)	22,384,037	168,415,963	190,800,000	5,000,000	14,080,000	19,080,000	19,080,000	19,080,000	19,080,000	19,080,000	19,080,000	57,240,000
		8	4층	22,384,037	164,615,963	187,000,000	5,000,000	13,700,000	18,700,000	18,700,000	18,700,000	18,700,000	18,700,000	18,700,000	56,100,000
		8	3층	22,384,037	160,815,963	183,200,000	5,000,000	13,320,000	18,320,000	18,320,000	18,320,000	18,320,000	18,320,000	18,320,000	54,960,000
		3	2층	22,384,037	157,015,963	179,400,000	5,000,000	12,940,000	17,940,000	17,940,000	17,940,000	17,940,000	17,940,000	17,940,000	53,820,000
		3	1층	22,384,037	153,215,963	175,600,000	5,000,000	12,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17,560,000	52,680,000
74.274 (74A)	116	88	기준층 (5층~최상층)	23,638,746	182,261,254	205,900,000	5,000,000	15,590,000	20,590,000	20,590,000	20,590,000	20,590,000	20,590,000	20,590,000	61,770,000
		8	4층	23,638,746	178,161,254	201,800,000	5,000,000	15,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60,540,000
		8	3층	23,638,746	174,061,254	197,700,000	5,000,000	14,770,000	19,770,000	19,770,000	19,770,000	19,770,000	19,770,000	19,770,000	59,310,000
		6	2층	23,638,746	169,961,254	193,600,000	5,000,000	14,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58,080,000
		6	1층	23,638,746	165,761,254	189,400,000	5,000,000	13,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56,820,000
74.955 (74B)	116	84	기준층 (5층~최상층)	23,855,658	182,044,342	205,900,000	5,000,000	15,590,000	20,590,000	20,590,000	20,590,000	20,590,000	20,590,000	20,590,000	61,770,000
		8	4층	23,855,658	177,944,342	201,800,000	5,000,000	15,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60,540,000
		8	3층	23,855,658	173,844,342	197,700,000	5,000,000	14,770,000	19,770,000	19,770,000	19,770,000	19,770,000	19,770,000	19,770,000	59,310,000
		8	2층	23,855,658	169,744,342	193,600,000	5,000,000	14,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58,080,000
		8	1층	23,855,658	165,544,342	189,400,000	5,000,000	13,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56,820,000
84.988 (84)	211	155	기준층 (5층~최상층)	27,048,682	202,451,318	229,500,000	5,000,000	17,950,000	22,950,000	22,950,000	22,950,000	22,950,000	22,950,000	22,950,000	68,850,000
		16	4층	27,048,682	197,951,318	225,000,000	5,000,000	17,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67,500,000
		16	3층	27,048,682	193,251,318	220,300,000	5,000,000	17,030,000	22,030,000	22,030,000	22,030,000	22,030,000	22,030,000	22,030,000	66,090,000
		12	2층	27,048,682	188,751,318	215,800,000	5,000,000	16,580,000	21,580,000	21,580,000	21,580,000	21,580,000	21,580,000	21,580,000	64,740,000
		12	1층	27,048,682	177,851,318	204,900,000	5,000,000	15,490,000	20,490,000	20,490,000	20,490,000	20,490,000	20,490,000	20,490,000	61,47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4항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했별 공의 소인 건조 등기 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상태 임.
- 상기 공급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분양되며, 발코니 확장에 대한 별도 비용 부담은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노인정, 어린이집 등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공의 일의 시설에 대한 권역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아파트에 포함된 가전품목, 부엌가구, 붙박이 세탁기 등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품목이 없음.
- 발코니 및 주민공동시설 등이 있는 층은 발코니, 주민공동시설 공간 등을 각층으로 간주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판매시점은 분양신고일 및 공급공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해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공급 등의 원칙에 의한 사유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세대 별 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처리 합니다. 단, 2%이내의 변동은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중도금은 당첨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의일정 비율에 의해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청약을 가능으로 한다. 각종 이상 분할하여 분양하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하여 관련법상 발코니의 일부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재에의 내용 등은 주택법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 및 마감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공동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 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 전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일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금 입주금과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공휴일 또는 금융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분양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영상 불출일자에 완납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 할 수 있음.
- 해수가로 본 부지에는 그 주변 등 지역의 상황으로 일조권 등을 현저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민원발생 시 계약자의 책임이 있음.
- 이 아파트의 구조 개선을 위해 홍보물과 다르게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화장면적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서비스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중수는 단지의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중수이며, 층 , 호수는 동 , 호수 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면적은 실제측량결과 입주 전금 납부시에 확인되는 정확한 토지는 분리과세 기준)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라인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동 , 호수가 확정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비례 하는 입장.
- 본 아파트는